양구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9-684호

2019년 제1회 양구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고

2019년 제1회 양구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02일

양구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 급	직 렬	직 류	선 발 예정인원	비 고
9급	시 설	일반토목	6명	
	운 전	운 전	2명	

2.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

가. 시험방법

1)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구 분	시험과목	시험 시간	비 고
9급(일반토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60분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 합니다.
9급(운전)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40분	

※ 합격자 결정 : 과목당 4할,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 합격자 결정, 단, 면접시험 응시대상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의 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2)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나. 시험일정

시 험 공고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9.09.02(월)~ ′19.09.20(금) /19일간	′19.09.18(수)~ ‘19.09.20(금) /3일간	서 류	-	-	‘19.09.25(수)
		필 기	′19.09.25(수)	′19.10.05(토)	′19.10.08(화)
		면 접	′19.10.08(화)	′19.10.17(목)	′19.10.18(금)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양구군 홈페이지 (http://www.yanggu.go.kr/)-시험정보 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1)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거주지 제한

- 시설(일반토목) 9급

·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고일 현재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운전 9급

·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구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고일 현재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구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3) 자격(면허)증 제한(당해시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시설9급(일반토목)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기능사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운전9급 : 제1종운전면허(대형) 소지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1종운전면허(보통) 및 제2종운전면허(보통) 소지자도 가능하지만, 대형버스 운행 등과 관련하여 제1종운전면허(대형) 소지자로 제한.

- 관련분야 자격증 : "붙임2" 참조

4)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붙임3)을 출력하여 작성

나. 접수기간 : ‘19. 09. 18(수) ~ ’19. 09. 20(금) / 3일간

다. 접수장소 : 양구군청 자치행정과(2층)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접수여부를 09.24(화)까지 반드시 접수처에 확인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

1) 응시원서(붙임3)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양구군 수입증지 부착
     (양구군청 종합민원실 구입)
2)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3)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병역사항과 주소이력 전체)
4) 이력서 1부(붙임4)
5) 자기소개서 1부(붙임5)
6) 자격조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6)
7)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또는 자격취득 확인서 1부
8)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7), 8) 항목은 해당자만 제출

5. 가산점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1)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가산비율</th><th>비 고</th></tr>
<tr><td colspan="2">취업지원 대상자</td><td colspan="2">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td><td>시설(일반토목)직렬만 해당</td></tr>
<tr><td rowspan="4">자격증 소지자</td><td rowspan="2">통신·정보처리분야</td><td>1%</td><td>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td><td rowspan="4">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td></tr>
<tr><td>0.5%</td><td>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td></tr>
<tr><td rowspan="2">사무관리분 야</td><td>1%</td><td>컴퓨터활용능력 1급</td></tr>
<tr><td>0.5%</td><td>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td></tr>
</table>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舊)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됩니다.
(舊 워드프로세서 2, 3급은 가점불가)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 예정인원이 6명인 일반토목 직류만 가점이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 지방보훈지청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대상 자격증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자격증 사본 등을 원서 접수처에 FAX(033-480-2590) 등으로 송부하고, 원서접수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필기시험전일까지 가산자격증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대상 자격증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양구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4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인사조직담당(033-480-2233)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양구군청 홈페이지(http://www.yanggu.go.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붙임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직급	시험과목		직렬	시설	운전
			직류	일반토목	운전
9급	경력 경쟁 임용	제1차	필수	물리	사회
		제2차	필수	응용역학개론 측량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붙임2)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관련)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시설	일반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성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운전	운전	제1종 운전면허(보통), 제2종 운전면허(보통)	

(붙임3)

응 시 원 서

본인은 (2019년 제1회 양구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양구군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		-	
20 년 월 일 양구군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시설(일반토목)서기보, 운전서기보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양구군수입증지 : 양구군 종합민원실에서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붙임4)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성 명 : (인)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식 구성 원칙

▸ 선발예정직위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조합하여 서식 구성

* 응시요건, 우대요건,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성 명	

□ 응시자격(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 선발 예정직위에 필요한 응시자격만으로 서식 구성
(복수의 응시자격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사항 모두 포함 가능)

가. 자격증 요건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00기술사	*0000년 00월 00일*	

※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필요한 경우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00기업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사원*	

나. 근무경력 요건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00기업(00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대리*	
00상사(00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과장*	

다. 학위 요건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00학	*0000년 00월 00일*	*박사*

※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이 필요한 경우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월일)	직 위	담당업무
00전자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과장*	

(붙임5)

자 기 소 개 서

○ 응시등급 :
○ 응시분야 :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2019.　　.　　.

작성자　○○○　(서명)

※ 작성요령(예)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붙임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2019년도 제1회 양구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직렬 응시자로서, 학위 · 경력 ·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양구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